

학생청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2013. 11. 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청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내용)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이하 '재학생'이라 함)는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행정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
2. 기타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

제3조(허위청구의 금지) ① 누구든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그 사실을 적시하여 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허위 청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본 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학생상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의 대표 각 2명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④ 교무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서울 및 국제캠퍼스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주관부서) 학생지원처는 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학생지원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구권)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한 대학장, 학과장, 지도교수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여한 교직원, 재학생 및 청구인은 활동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심의청구) ① 재학생이 청원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심의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2. 소속대학, 학과 및 학년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학생지원처장은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거나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12조(보완요구) 위원장은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심사) ① 위원장은 제12조의 경우 이외에는 위원회에 부의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 중에서 3인의 예비심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1주일이내에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검토 기간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 청구내용이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청구인 또는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하여야 한다.

③ 심의과정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심의청구의 취소)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심의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은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청구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학생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이중청구의 금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다시 심의청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심의청구 할 수 없다.

제20조(차별대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심의 청구를 하였거나 심의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